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이외에 운영부서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주요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언어, 외국어, 사고력, 정보활용능력 등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상담·컨설팅, 멘토링, 클리닉, 특강, 워크숍, 공모전, 그룹활동, 전시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2. 진로지원 프로그램 :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탐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 캠프, 특강, 공모전, 직업 및 직무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3.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 학생들의 취·창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자격증 취득 강좌, 특강,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 모의오디션 면접, 창업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4. 산학연계 프로그램 : 학생과 산업체의 연계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과 캡스톤 디자인, 산업체 연계교육, 특강, 현장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5. 기타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과정 중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제3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대학 내 부서 및 학과에서 운영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처에서 관리한다.

③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학과 및 학생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
3. 비교과 교육과정 개별 프로그램 운영결과(성과) 보고서 작성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 역량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향상도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성과분석

2. 교과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노력

제5조(운영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또는 TF팀을 둔다.

②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 정책 및 계획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